

## 건설산업연구소 규정

제정 2000. 07. 01    개정 2007. 03. 01  
 개정 2013. 02. 28

제1조 (목적) 이 연구소는 토목, 환경 분야 전문능력을 결집하여 대학의 발전, 나아가서는 지역 및 국가 경제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 대학의 특성화, 교육의 전문화, 연구 활성화 환경조성에 기여하여 우리 대학의 대외적인 경쟁력 제고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. 또한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지속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자연친화적인 지역사회 개발을 선도하며,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극대화 차원에서 지역사회 건설관련업체의 기술수준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, 영동지역이 생태건축의 국제적인 메카로 발전하는데 요구되는 환경조성에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13. 2.28)

제2조 (명칭)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동대학교내에 “건설산업연구소”[(Research Institute of Constructional Industry)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.)]를 둔다.

제3조 (연구원) ① 이 연구소의 연구원은 본교의 토목 관련 전공의 전임교원을 중심으로 구성한다. 단, 특정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 할 수 있다.(개정 2013. 2. 28)

② 초빙된 전문가는 위촉 연구 교수로 임용되고, 수행하는 연구 과제 종료시 임용계약이 자동해지 된다.

③ 상근연구원의 임용기간은 1년이며, 1회에 한하여 재임용 할 수 있다.

제4조 (사업) 이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토목, 환경 분야에 긴요한 기술 및 정책에 관한 조사, 실험 및 연구와 이에 관련된 기초 및 응용 과학의 연구(개정 2013. 2. 28)
2. 위의 분야에 대한 기술 지도, 훈련 및 양성
3. 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와의 연계 연구 활동을 수행
4. 건설 산업 발전에 관한 홍보, 도서 간행 및 관계 문헌의 수집을 수행하며, 연구 업적에 대한 종합 학술지 및 논문집을 발간한다.(개정 2013. 2. 28)
5. 기타 연구 목적에 필요한 사항

제5조 (소장) ① 소장은 본교 전임 교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② 소장은 이 연구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.

③ 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 (연구팀) 이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운영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구팀을 설치 및 폐지할 수 있다.

제7조 (연구지원팀장)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장은 연구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연구지원팀장을 임명할 수 있다.

제8조 (위촉 연구 교수 및 위촉 연구원) ① 위촉 연구 교수는 박사 학위 소지자이자 특정연구수행의 전문가로서 경력에 따라 연구 조교수, 연구 부교수, 연구 교수로 구분하되, 위촉 연구 교수는 소장이 임명한다.

② 박사학위 소지자로 연구 경력이 적은자는 위촉 연구원(Post Doctorate)으로 소장이 임명한다.

제9조 (사무원) 연구소의 제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연구소장은 사무원을 임명, 해임할 수 있다.

제10조 (운영위원회) 이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둔다.

제11조 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4명으로 구성하고, 소장은 본교 전임 교원 중에서 위촉한다.(개정 2013. 2. 28)

② 소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, 위원장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제12조 (위원회회의) ① 위원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③ 위원회의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 위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

제13조 (심의 사항) 위원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
2. 연구소의 연구 활동 및 사업계획에 관한 계획과 결과
3. 연구소의 예산 심의와 결산
4. 연구사무의 평가 및 집행 예산의 조정
5. 연구실의 설치 및 폐지
6.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4조 (재정) 이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.

1. 교외 연구비 및 수탁 과제비
2. 창조금과 기타 보조금
3. 대학의 연구 및 운영 지원 보조비

제15조 (연구비 및 운영비) ①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에 의한다. (전문개정 2013. 2. 28)

제16조 (예산 및 결산) ① 연구소의 예산편성은 대학의 회계연도에 따르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연구소의 예산편성과 결산 및 집행은 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